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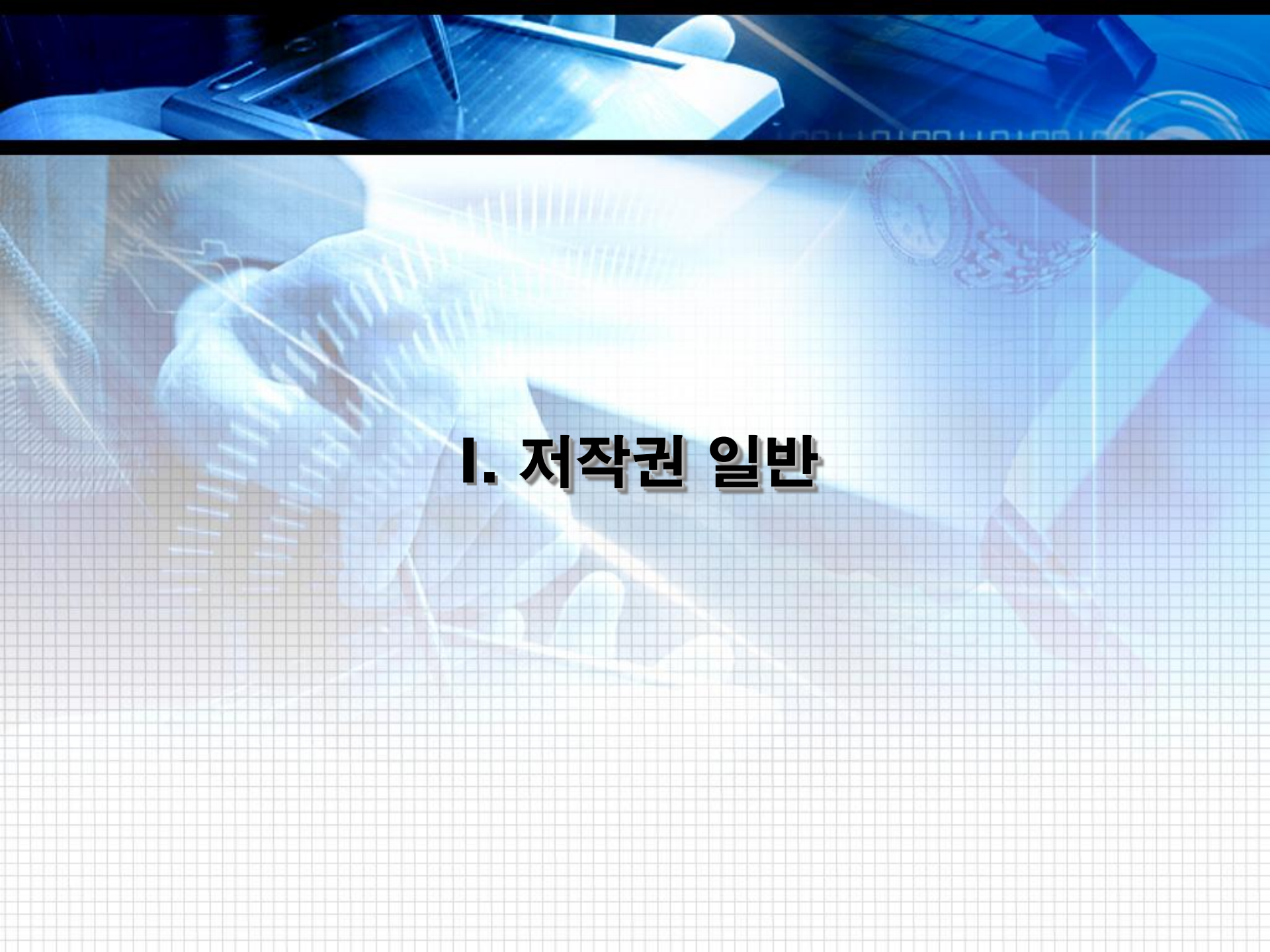


목차

I. 저작권 일반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III. Q & A



I. 저작권 일반

I. 저작권 일반

저작물이란?

● 사상 또는 감정

- 철학적이거나 심리적 개념이 아닌 생각이나 기분 정도의 넓은 의미

● 표현

- 언어, 소리, 영상 등 매체를 통해 외부에 나타날 것
- * 표현되지 않고 구상만 하는 경우는 저작물이 아니며,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표현물의 성격이 추상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보호대상이 아님

● 창작성

-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상대적 개념)
-> 신규성을 보호요건으로 하는 특허 등과 차이
- 대법원 판례(94도2238, 1995. 11. 21)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작가 자신의 독자적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

I. 저작권 일반

저작권이란?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I. 저작권 일반

저작인격권이란?

-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
 -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I. 저작권 일반

저작재산권이란 ?

-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 사진 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을 다시 제작할 권리
 - **공연권** : 저작물을 상연이나 상영, 연주, 연설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 미술 · 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송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I. 저작권 일반

저작인접권이란?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생실연)방송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9.26 시행)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
 -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9.26 시행)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권리자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유통사업자

이용자

I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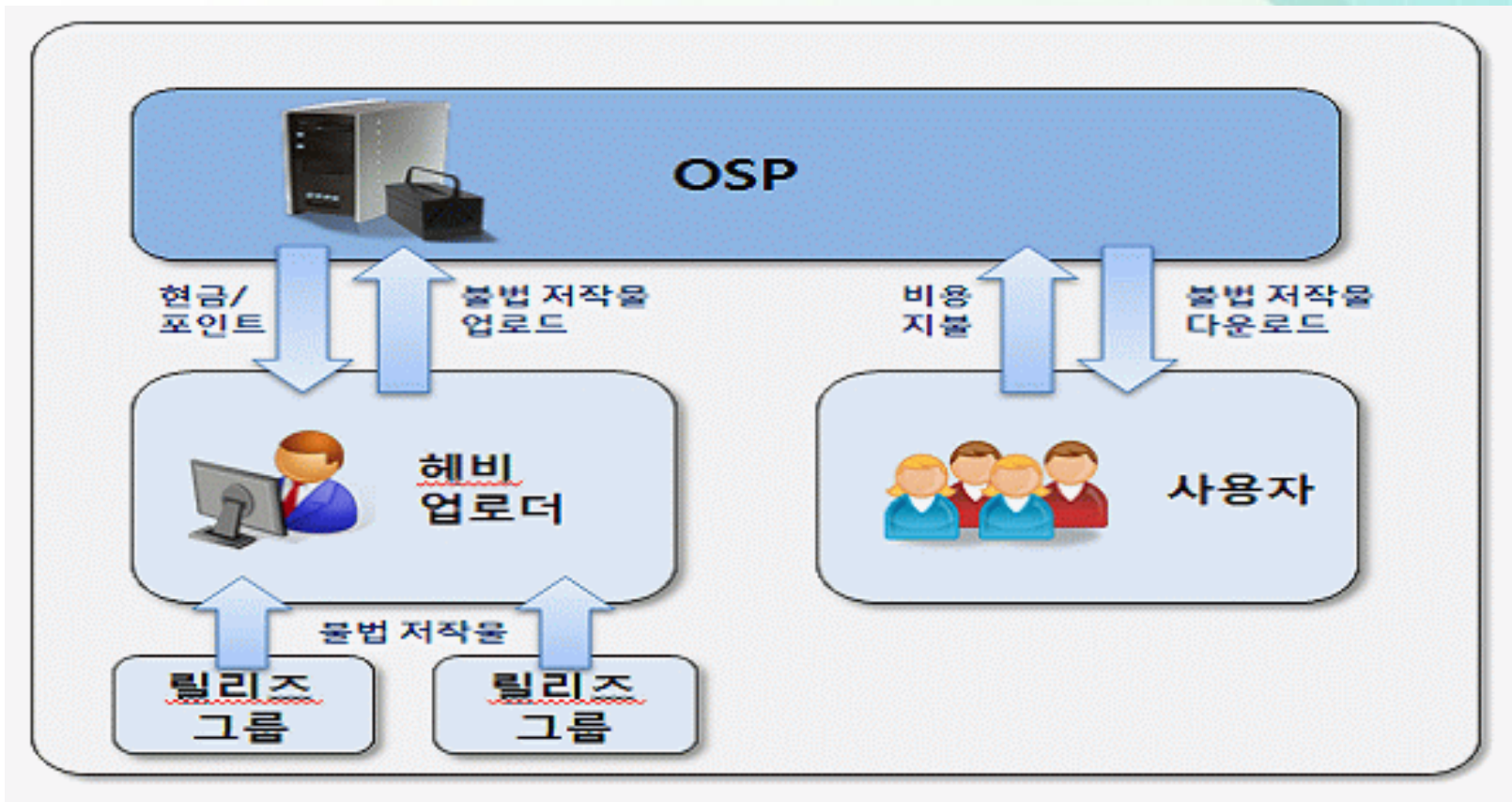
저작권법 개정 배경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외 통상 협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정보통신망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음반·영상물 등의 시장 유통구조 왜곡 및 창작의욕 위축

I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구조

-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가 일반 사용자(User)가 아닌 소수의 헤비업로더에 의해 발생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규제

● 불법복제물 유통 개인 계정 정지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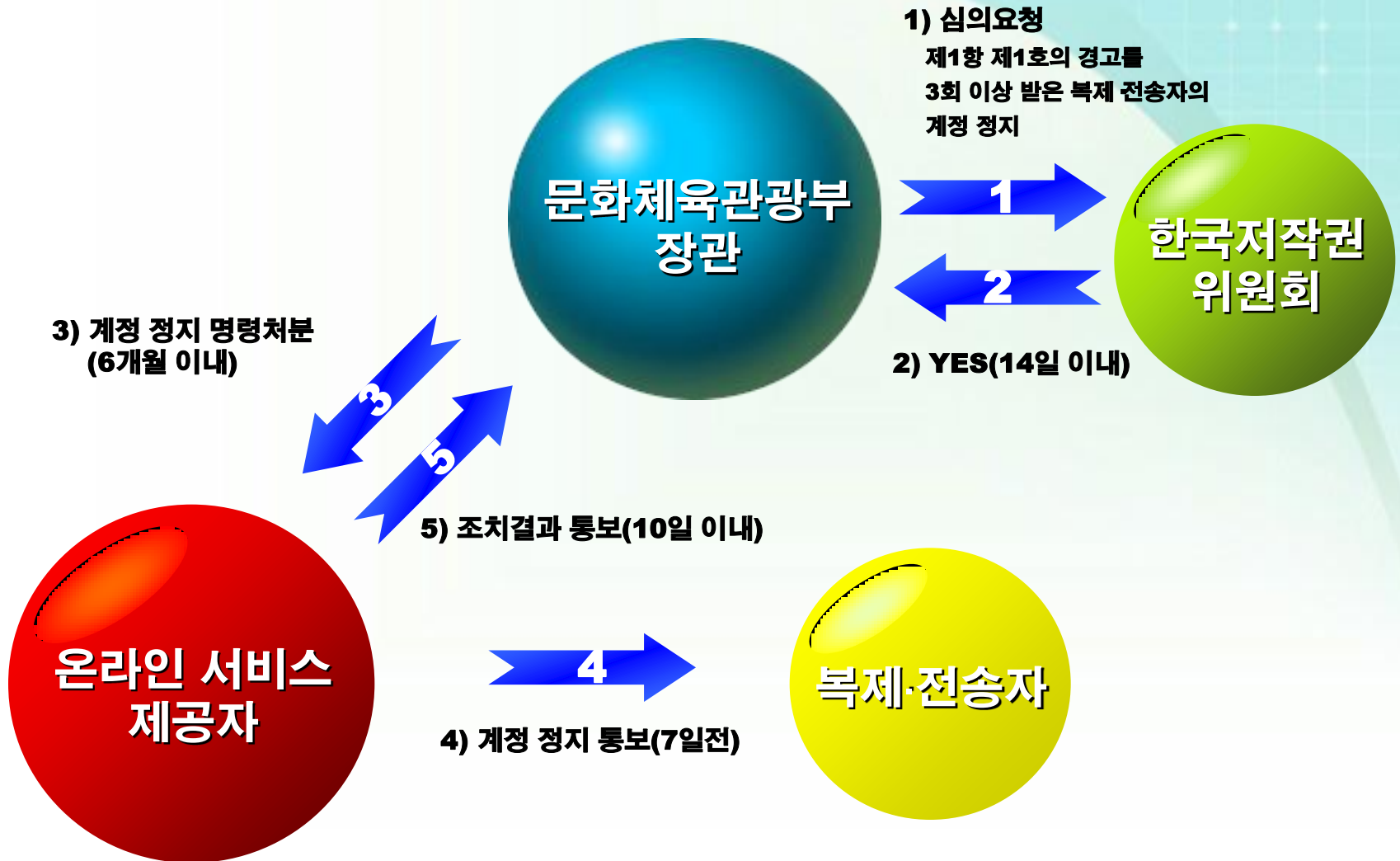
- 대상 :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
- 내용 : 불법복제물 업로드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 서비스 제한
(다만, 이메일 사용 가능)
- 기간 : 최대 6개월

● 불법복제물 게시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 대상 :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
- 내용 :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정지
- 기간 : 최대 6개월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계정 정지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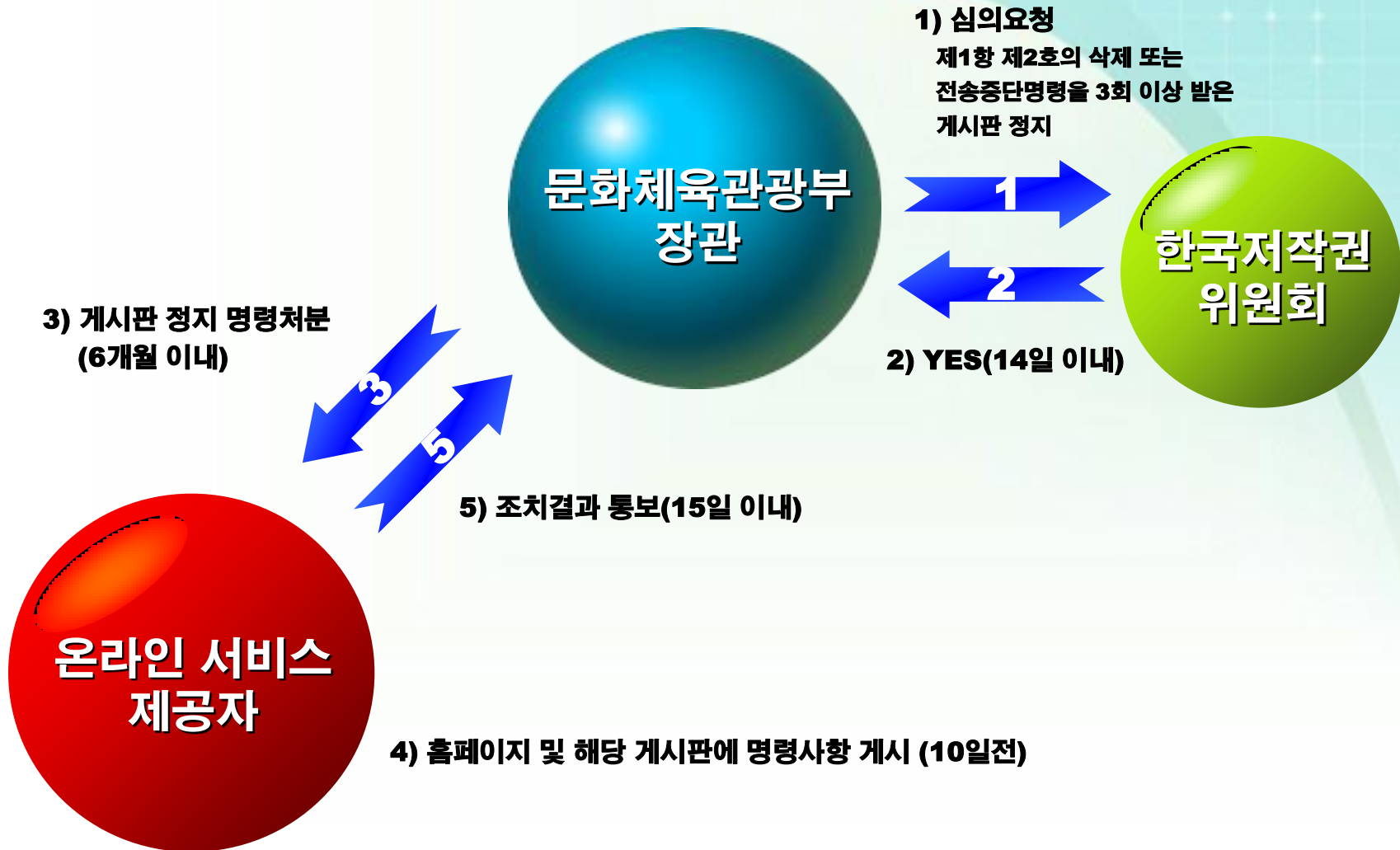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 계정 정지의 범위

- 계정 정지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
- A 사이트에 3개의 계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 3개의 계정 중 어느 하나의 계정이 명령 대상이 되었을 경우, 다른 계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지 명령 적용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 명령 대상 게시판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한함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란 게시판 이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로 쇼핑·영화·음악감상·현금 교환 등의 제공, 사이버 머니·파일 저장공간 등을 제공하여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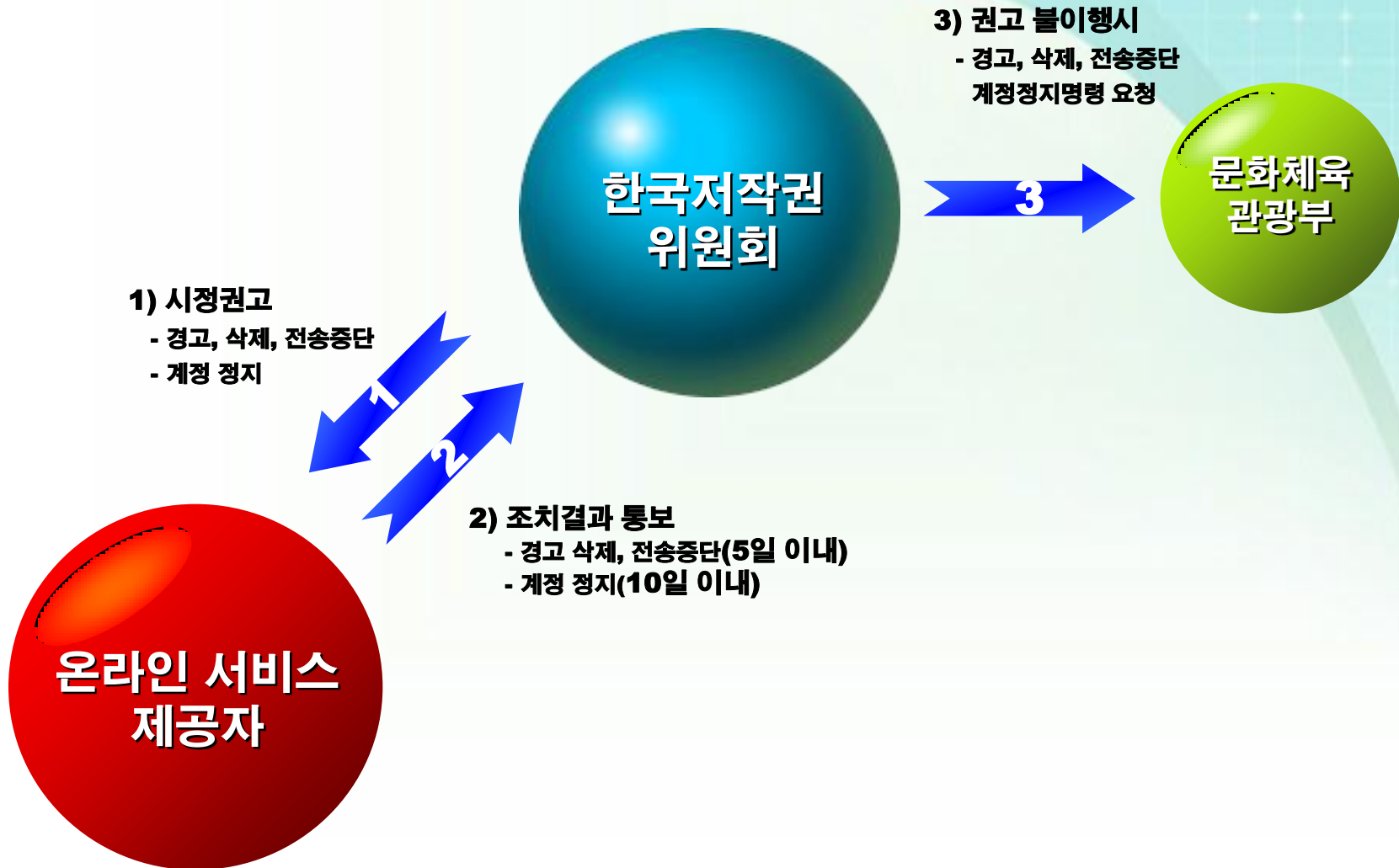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시정권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OSP에게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
 -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 시정권고는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음
 - 다만, 문화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시정권고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 ① 공표된 저작물은 ②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③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가
능(§28), 이 경우 ⑤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37)
- ① 공표된 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을 포함한 영상·음악·미술
저작물 등 저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
②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함
 - 장식용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표지 등에 이용(x)
 - 상품광고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x)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 ③정당한 범위 내일 것
 - 정당한 범위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한 판단
 - 인용되는 분량, 내용상의 주종의 구분, 저작물의 형태, 이용목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 ④공정한 관행에 합치
 - 관행의 존재여부
 - 인용의 목적, 방법, 선의(善意_신의성실)
- 私見)§28는 off-line/on-line에서의 적용
 - 디지털시대의 적합한 인용 가이드 마련 필요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 패러디(parody)

- 표현형식을 불문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흉내·과장·왜곡시켜,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을 비평

- 서태지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담긴 진지한 고민을 풍자하고 희화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비평이나 새로운 웃음을 선사한 것으로서 이른바 패러디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저작물의 일부 변형은 정당한 이용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략-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패러디(parody)

서태지 'Come Back Home 패러디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

-중략-

이 사건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의 노래에 음치가 놀림받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거나 대중적으로 우상화된 신청인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등의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주장하나,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개사곡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개사곡에 피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비평과 풍자가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개사곡이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피신청인들이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사곡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II. 저작권법 주요 내용

● 신문기사 스크랩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7_5호)
- 인사발령·부고(訃告)나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과 같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은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음
-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는 가능

III. Q&A

생각해 봅시다.

Q.

맹수가 동물원에서 탈출하였습니다. 맹수를 사살? 생포?

A.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을 중히 침해



III. Q&A

Q. 권리자의 고소 없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A. 개정 저작권법상의 행정명령제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규제 조치로서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처분이 가능
정부는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할 책무가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요청없이도 1차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거나, 저작권자가 행정적 규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심의과정이나 의견제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될 것임
•저작권자의 고소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요건임

III.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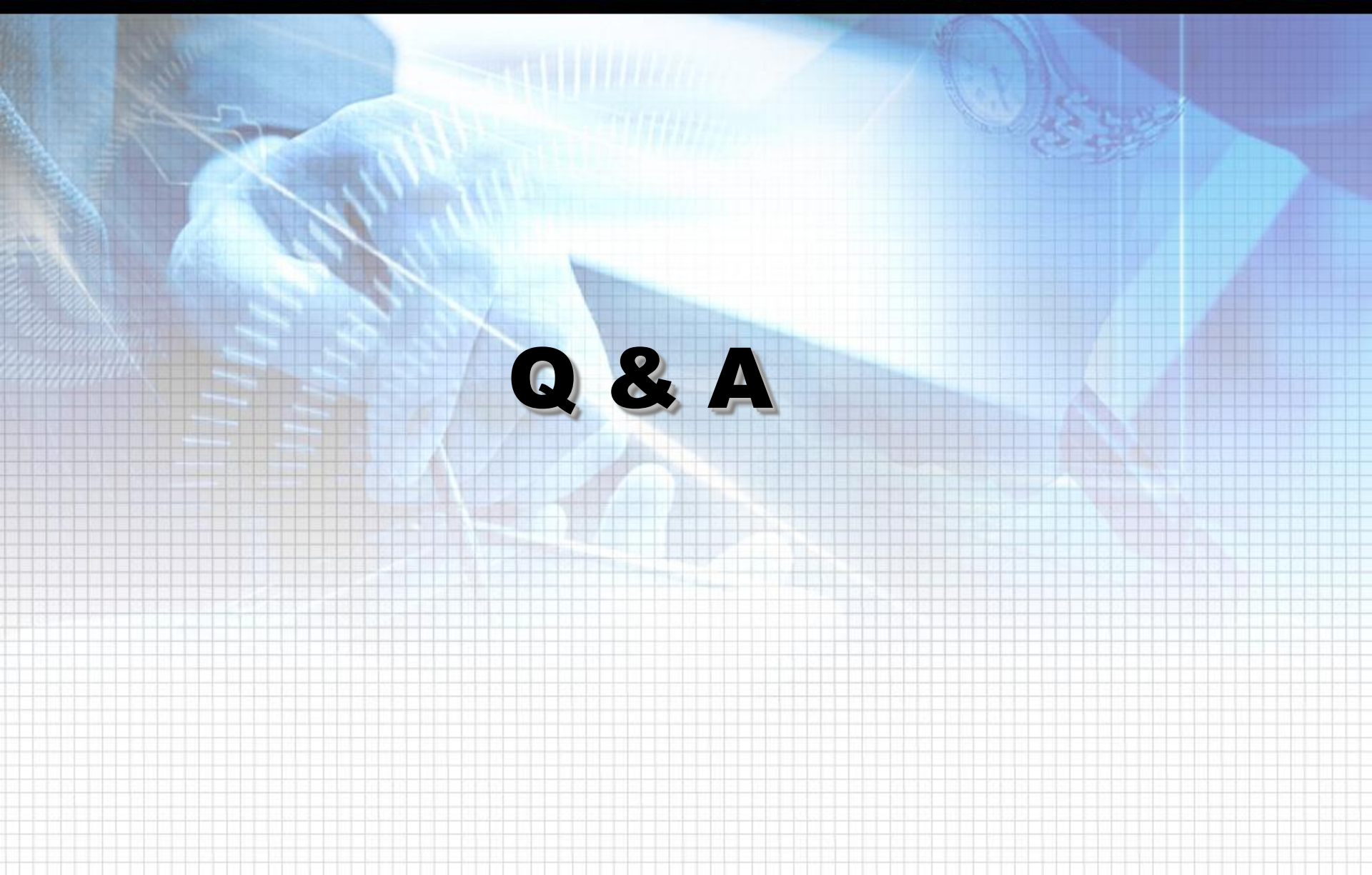
**Q. 친목도모 카페에 회원의 일부가 불법저작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카페와 불법저작물을 올린 사람은 명령을 받나요?**

A. 계정 정지명령은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용자는 계정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은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한하기 때문에 친목도모 카페에 일부 불법저작물이 업로드된다고 하여 서비스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임
다만,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문화부장관의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III. Q&A

Q.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게시판은 하나의 게시판 전체를 의미 하나요?

A.
장르별, 저작물별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위폴더(게시판)을 두는 게시판이 있을 경우, 하위 폴더에만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경우에는 해당 하위 폴더만이 명령의 대상이 될 것임
그러나 여러 개의 하위 폴더 전체가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었다면, 해당 게시판 전체가 명령의 대상이 될 것임



Q & A



감사합니다 !

chandong@copyright.or.kr